

# 2024년도 서울의료원 안전보건관리 계획

2023. 12.

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

# <u>개 정 이 력</u>

| 연번 | 년월          | 주요개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성자 | 검토     | 검토             | 검토  | 확인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
| 1  | 2022.<br>11 | 2023년도 서울의료원<br>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   | 최혁재 | 전자결제완료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2  | 2023.<br>01 | 도급업체협의체<br>어린이집 포함(9~10P)        | 최혁재 | 신교섭    | <del>n</del> - | 승원  | 송관영 |
| 3  | 2023.<br>05 | 도급업체협의체 명칭변경 →<br>안전보건협의체(9~10p) | 최혁재 | (대결)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4  | 2023.<br>10 | 2024년도 서울의료원<br>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   | 박명선 | 신교섭    | 유승원            | 김혜정 | 이현석 |
| 5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6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7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8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9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10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11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12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13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14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| 15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

## 목 차

| 1. 안전보건관리 개요 및 현황 3 |
|---------------------|
| 2. 안전보건경영방침         |
| 3. 안전보건추진 방향 4      |
| 4. 안전보건 관리체계 7      |
| 5. 2023년 업무추진현황 8   |
| 6. 2024년 주요 추진계획 14 |

- ※ 첨부서류 : 1.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점검표
  - 2. 안전 보건 순회점검표
  - 3. 주요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
  - 4. 유해·위험한 기계·기구 관리

## 안전보건관리 개요 및 현황

#### 1. 안전보건관리 개요

#### □ 목 적

○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. 서울의료원 내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 자의 안전을 유지,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## □ 관련법령

-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(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)
  -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,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법률 등

#### □ 적용범위

○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서울의료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.

#### 2. 현황

#### □ 안전관리 대상 시설 현황

(2023년 10월)

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(2020 6 10 6)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사업장명 |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   | 근로자 수 | 1,951명(월평균)    |
| 업종   | 보건업             | 주요용도  | 의료시설(종합병원)     |
| 규모   | 지하 4층 / 지상 13층  | 대지면적  | $38,012.10m^2$ |
| 건축면적 | $12,659.22m^2$  | 조경면적  | $9,667.01m^2$  |
| 연면적  | $105,041.37m^2$ | 주차대수  | 805대           |

#### □ 산업재해 발생현황

(2023년 10월)

| ュ         | 분     | 평균   | 2023  | 2022  | 2021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| ₹     | ਅੰਦ  | 서울의료원 | 서울의료원 | 서울의료원 |
| 총 사고 발생건수 |       | 8.33 | 7     | 14    | 4     |
| 사망사고 발생건수 |       | _    | -     | _     | _     |
|           | 계     | 8.33 | 7     | 14    | 4     |
| 인명피해      | 사망자 수 | _    | _     | -     | _     |
|           | 부상자 수 | 8.33 | 7     | 14    | 4     |

<sup>※</sup>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고용노동부에 산재조사표 제출 건으로 표기함

#### □ 서울의료원 산업재해율 목표(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23.06 기준)

|   | 사업·업무명 | 2023년 재해율 | 2024년 목표재해율 |
|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| 산업재해율  | 0.39%     | 0.1%        |

## ₩ 안전보건 경영방침

우리 병원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, '건강하고 안전한 일터'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.

- 1)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'안전'을 최우선으로 하고, '중대재해 제로 병원'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실행한다.
- 2) 안전·보건과 관련된 법률·지침·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안전·보건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.
- 3) 잠재된 유해·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,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,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.
- 4)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병원을 만든다.

## Ⅲ 안전보건추진 방향

비 전

## 서울시민의 안전병원

목 표

## 중대재해 제로

#### 추진전략

##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

#### 안전보건 협의체

- 안전보건협의체 운영(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)
-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
- ·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
- · 수급업체 사업장 주간 점검 실시

## 산업안전 보건교육

- 전 직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
- · 각 부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(16시간/년) 실시
-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 근로자교육(2시간/월) 실시
- · 유해물질취급 등 근로자 특별교육(16시간) 실시
- · 신규입사자 대상 채용 시 교육(8시간) 실시

#### 순회점검

#### - 순회 산업안전점검 실시

- · 일일 순회점검 : 매일(안전관리자)
- · 정기점검 : 2회/월(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)
- · 특별점검 : 산업재해 발생 시(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)

###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

#### -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

- · "근로자 작업 중지 제도" 운영
- ·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·시행
- · 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하는 일시적 간헐적 공사 안전교육 시행

#### 위험성 평가실시

#### - 모든 부서원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

- · 위험성 평가 교육 실시
- · 각 부서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
- 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

## 건강장해 예방활동

#### - 건강검진 검진 및 사후관리 실시

- · 정기직원건강검진
- ·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 전·후 건강검진
- · 검진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
- ·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(예. 걷기 앱 사용 등)
- 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
- ·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
- 이상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
-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예방활동
-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인자조사 실시
- · 근골격계 예방활동 실시(허리 및 손목보조기 지급, 손목보호 마우스 지급 등)
- 연 ] 회 압박스타킹 지급

###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개최

#### -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

- ·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·운영
- · 분기마다 정기회의 개최

### 직무 중 감염노출 관리

#### - 직무 중 감염노출 관리

- · 혈액매개질환 및 기타 위험요인에 노출된 직원관리(상시/월)
- · 발생률 관리를 통한 개선활동 및 대책방안 마련

## 감정노동보호 위원회 운영

#### - 임상심리사의 감정노동보호 활동

- · 직원 대상 ]:]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
- ·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감정노동보호 예방 캠페인
- 고충 전문 상담창구 운영
  - · 성희롱·성폭력, 직장 내괴롭힘, 일반고충 등 상담 및 조사, 처리
-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활동
- ·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돌봄 힐링 프로그램 운영
- · 자연과 조우하며 심신의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여 신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

##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점검

#### - 작업환경측정

- · 측정대상 :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21에 해당하는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부서
- · 측정시기 : 상/하반기 년 2회 실시
- · 측정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활동실시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점검
- · 안전·보건관리자는 월 2회 안전관리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
- · 취급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점검
- ·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·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
- · 관리대상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 물질명·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

##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

#### - 반기별 1회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

- · 법 시행령 제4조,제5조에 의거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
- · 법 시행령 제8조.제9조에 의거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

## 안전보건경영 위원회 개최

##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(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)에 따라 반기별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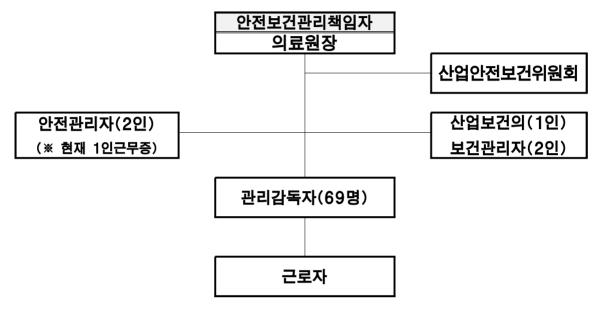
- · 내부위원(3인), 안전관리자(1인), 보건관리자(1인),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2인, 외부전문위원 2인으로 총 9인으로 구성
-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

## ₩ 안전보건관리 체계

#### 1. 안전보건관리 조직

#### □ 조직 현황

- 안전보건 전담 조직 : 재난관리팀(2022년 1월)
- 산업안전보건조직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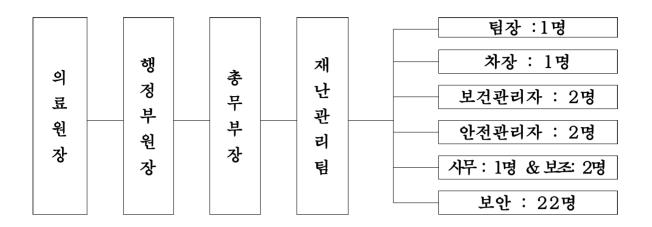
#### 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업무 및 역할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(의료원장) :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관한 사항
- 관리감독자(각부서의 부서장)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의(직업환경의학과)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관한 사항
- 안전관리자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관한 사항
- 보건관리자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
-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

| 구분  | 사용자 위원   | 근로자 위원   |
|-----|--|--|
| 위원장 | 의료원장   | 근로자대표<br>(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에 따른)   |
| 위원  | • 산업보건의 • 안전관리자 1인 • 보건관리자 1인 •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| <ul> <li>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<br/>명예산업안전감독관</li> <li>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<br/>해당 사업장의 근로자</li> </ul> |

#### 2. 재난관리팀 조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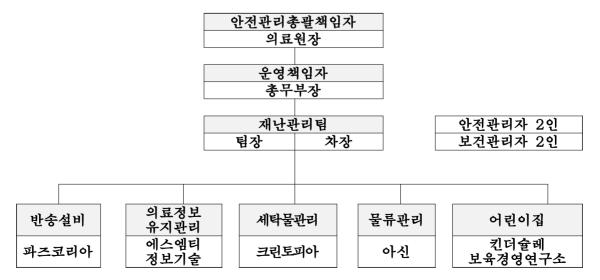
□ 재난관리팀 인력 및 조직구성체계도(정원 : 31명)



## V 2023년 업무추진현황

#### 1.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현황

- □ 개 요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라,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(사고방지)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
  - 협의체 구성 :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외 12인
    - 1) 안전보건총괄책임자 : 의료원장
    - 2) 운영책임자 : 총무부장
    - 3) 수급업체 사업주의 업무를 위임 받은 관리자 5인
    - 4) 재난관리팀장, 재난관리팀차장, 아전관리자, 보건관리자



#### ○ 협의체 운영

| 구분     | 주기   | 관련법령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정기회의   | 월1회 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|    |
| 합동점검   | 분기1회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|    |
| 주간순회점검 | 매주1회 |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|    |

○ 협의체 운영 결과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
## 2. 2023년도 위험성평가 결과

□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: 1,120건 (전년도 1,469건)

| 구분         |     | 위험도 | 건수    | 비율    | 개선사항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위험         | 1~3 | 하   | 1059  | 94.5% | 현재상태유지(허용가능)        |
| 취임<br>  등급 | 4   | 중   | 59    | 5.3%  | 현재상태유지 및 감소대책실행     |
| <u> </u>   | 6~9 | 상   | 2     | 0.2%  | 즉시개선, 업무중지 후 감소대책실행 |
|            | 계   |     | 1,120 | 100%  |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□ 전체 재해유형 상위 5순위

| 구분(전년도 순위)    | 건수  | 비율   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1순위 : 넘어짐 (1) | 140 | 12.5% |
| 2순위 : 감전 (4)  | 105 | 9.4%  |
| 3순위 : 부딪힘 (2) | 102 | 9.1%  |
| 4순위 : 찔림 (7)  | 89  | 7.9%  |
| 5순위 : 베임 (5)  | 84  | 7.5%  |

#### □ 감소대책실행 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)

○ 실행대상 : 위험도 "중" 이상(총61건)

○ 조치결과

- 감소대책실행 후 위험도 "하": 60건 (개선율 98.4%)

- 감소대책실행 후 위험도 "중": 1건

| 위험성            |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실행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위험도            | 건수           | 위험도  | 위험도 건수 개선율 조치사항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중              | 59           | 하    | 58                       | 98.3% | 안전교육, 시설보완 등 조치로 위험도를 허용범위로 낮춤 |  |
| ठ              | 39           | 중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| 1.7%  | 감소대책실행 후에도 위험도가 높음, 예방관리실시     |  |
| 상 2 하 2 100% 위 |              | 100% | 위 개선 외 보수실시 및 위험요인제거로 낮춤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#### ○ 예방관리

- 신규예방관리대상 : 1건

| 연번 | 부서          | 재해유형         | 보완사항  | 예방관리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|
| 1  | 진단검사<br>의학과 | 유해화학<br>물질노출 | 유해화학물질(부식성)을 보관하는 전용 안전케<br>비넷 구입 및 내부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<br>시설의 보완 | 중,단기 |

#### 3. 건강장해예방활동

- □ 2023년 직원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실시 결과
  -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, 130조(단, 채용시 검진은 제외) 및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

#### □ 대상자 및 검진시기

| -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담당 계획 및 내용 |       | 계획 및 내용  |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시기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.7.         | 인사운영팀 | 채용 <sup>1)</sup><br>검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예산  | 채용시 |
| 직원   ·<br>  건강  <br>  검진 | 신규            | 보건관리자 | 배치전<br>검진  |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별표22에<br>해당하는 업무 종사자의 배치 전 | 비예산  | 상시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직 보건관리자      |       | - 일반·특수검진(정기, 배치 전·후 포함)<br>-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<sup>2)</su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예산  | 연1회 |

- 1)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질병관리본부 「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」에 따른 사항
- 2)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: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에 따른 고위험부서만 정기적 검진 실시

#### □ 검진결과

2023.10.31. 기준, 단위(명)

|           | 구 분        | 검진 인원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<b>オコ</b> | 채용 시 검진    | 336   |
| 신규<br>    | 배치 전 검진    | 353   |
| 재즈        | 니(일반·특수포함) | 1,448 |

※입사 후 사직자 포핚

#### □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결과

2023.10.31. 기준, 단위(명)

| 연도     | 구분          | 잠복결핵<br>검진인원 | 잠복결핵 양성자인원 | 활동성 결핵<br>의심 인원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000014 | 고위험부서(재직)   | 795          | 15(1.88%)  | -               |
| 2023년  | 신규(채용 시 검진) | 336          | 16(4.76%)  | _               |

#### □ 2023년 검진이상 소견자 사후관리 내역

- 검진결과 이상소견 시 문자 및 상담 실시 : 154건(※ 잠복결핵검진 포함)
- 2023년 근골격계질화 부담작업 예방활동
-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
- 상반기 압박스타킹 지급결과

2023.10.31기준

| 구 분   | 대상자  | 지급수량(개) |
|-------|------|---------|
| 압박스타킹 | 전 직원 | 1,214   |

#### 4.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

□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35조. 37조

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

가.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· 의결함

나. 분기별 실시 : 1분기(3/24), 2분기(6/29), 3분기(9/21), 4분기(12월중 시행)

다.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사항에 따라 직원의 안전·보건 사항 심의·의결함

#### 5. 작업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점검

#### □ 작업환경측정

○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

○ 예산 : 13,200,000원 중 9,900,000원 사용

(※ 11월 하반기 측정 시 사용예정)

○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

- 대상 : 13개 부서 포름알데히드 외 18개 물질 측정

- 측정 결과 : 불검출 또는 노출 기준 미만 측정됨

#### 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 안전점검

○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, 22조

○ 점검 및 교육

- 안전·보건관리자는 월 2회 안전관리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

- 취급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점검
-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·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 물질명·사용량 및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 일지 점검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의 신규 구입 및 교체 시 유해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물질에 대한 MSDS 교육실시 확인

### 6. 2023년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활동 현황

□ 2023년 전 직원 힐링 프로그램 참석 현황

2023.10. 단위(명)

| 참여인원 | 운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장소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18  | 2023.04. ~ 2023.05. (총 5회) | 원내(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) |

#### □ 2023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석 현황

2023.10. 단위(명)

| 참여인원 | 운영기간            | 운영장소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20  | 2023.10. (총 5회) | 원외(불암산 산림치유센터) |

#### 7. 2023년 직무 중 감염노출 현황

2023.10.31. 단위(명)

| 직종별 | 간호사 | 미화직원 | 응급<br>구조사 | 의무보조 | 의사 | 치위생사 | 임상<br>병리사 | 합계 |
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|----|
| 인원  | 20  | 7    | 1         | 2    | 8  | 1    | 1         | 40 |

2023.10.31. 단위(명)

|       |     | 1   |     |      |    |    |    |
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----|----|----|
| 위험요인별 | HBV | HCV | HIV | VDRL | 모름 | 없음 | 합계 |
| 인원    | 5   | 6   | 3   | 9    | 10 | 33 | 66 |

- 노출시 직무 중 감염노출 시 조치사항에 따라 추후관리 시행
- 관련부서에 직무 중 감염노출 분기별 보고서 결재문서 공유
- 지표결과보고서를 그룹웨어에 게시하여 전직원 공유
- 포스터 등을 활용한 '직무 중 감염노출 예방법' 홍보
-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직무 중 감염노출 감소 활동

#### 8. 2023년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의무이행 현황

-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및 홈페이지 게시
-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(재난관리팀) 구성
- 유해위험요인 확인(반기 1회) 개선 절차 마련 : 위험성 평가
-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입 등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  - 2023년도 확정 예산 : 100.120천원
  - 2023년도 집행 예산 : 48.430천원(2023년 10월 말 기준)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 수행위한 조치 및 안전·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, 필요조치(반기 1회)
- 중대산업재해 종합점검 등
- 점검기간 : 2023년 6월 1일 ~ 6월 30일(상반기) 2023년 12월 1일 ~ 12월 31일(하반기 예정)
- 2023년 상반기 점검결과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;  | 점검결과     |  |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연번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검<br>합계 | 양호  | 미흡 | 해당<br>없음 | 개선요망사항   | 비고           |
| 1  | 중대재해처벌법<br>종합점검                  | 17       | 12  |    | 1        |  | 시정명령<br>없음   |
| 2  | 관리감독자 업무<br>수행평가 점검<br>(부서장 65명) | 378      | 378 |    |          | 분만실 등<br>- "중량물 취급 주의"<br>안전표지 부착<br>101병동 등<br>- 전기선 정리 | 개선요망<br>사항완료 |
| 3  | 중대시민재해<br>의무이행점검<br>(6개부서)       | 66       | 23  |    | 43       |  |              |

- 안전보건경영위원회 특별점검 결과
  - 상반기 특별점검
    - 1) 점검일자 : 2023년 5월 19일
  - 2) 참석인원 : 의료원장 외 11명
  - 3) 점검장소 : 1층 복도 및 전기실, 기계실
  - 4) 개선사항
    - · 1층 복도(카페) 천장 무드 등기구 철거
    - · 전기실 안전수칙 확대 부착 및 인증제품 사용
    - · 기계실 배관 보완 및 트렌치 설치 등
  - 하반기 특별점검
    - 1) 점검일자 : 2023년 11월 21일(예정)
    - 2) 참석인원 : 의료원장 외 11명
- 안전·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 인력배치 완료
-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필요시 개선방안 수립·실행
  - 산업안전보건위원회·도급업체협의체 운영
-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조치 매뉴얼 마련,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(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)
  - 중대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 체계, 대응 순서도, 업무절차, 재발방지대책, 후속조치 매뉴얼 수립완료
  -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 운영 : 2021.12.27부터 시행
- (도급·용역·위탁) 시 안전·보건 확보 기준·절차 마련 및 점검
  -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
  - 계약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"인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" 추가
  - 최초업무 개시 전 해당업무 종사자 중대(산업)재해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지도
  - (도급·용역·위탁)업체 중대(산업)재해교육

| 교육대상       | 교육월 | 작업(공사) 명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11월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12월 |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1월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2월  | 영상의학과 디지털 에스선 촬영장치 설치공사        |
| (도급·용역·위탁) | 3월  | 컨테이너 CT 이전설치 공사 외 6건           |
| 업무 최초      | 4월  | 의학연구소 공기구 비품 폐기 및 의료장비 이전 외 3건 |
| 개시 전       | 5월  | 승강기 1호기 권상기 모터 교체 공사 외 3건      |
| , , –      | 6월  | 흡연부스 설치 공사 외 1건                |
| 해당 업무 종사자  | 7월  | 기계실 배수로 트렌치 설치 외 금속공사 외 3건     |
|            | 8월  | 외래환경 및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 외 2건       |
|            | 9월  | 심뇌혈관센터 혈관조영촬영장치 설치 공사          |
|            | 10월 | 구내식당 스팀배관 교체공사 외 3건            |

- 1. 안전교육실시 : 개인보호구, 보호장치, 작업대상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등 조언
- 2. 현장안전점검 : 공사기간 내 불시 점검



## VI 2024년 주요 추진계획

## 1. 안전관리업무 추진계획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항 목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  | 율   | 4  |   |   |    |    |    | ul ¬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--|----|---|---|----|----|----|------|
| T E                  | 앙 흑            | 1 | 2 | 3 | 4 | 5 | 6   | 7  | 8 | 9 | 10 | 11 | 12 | 비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월회의     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안전보건<br>협의회          | 주간순회점검  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분기합동점검         |   |   | • |   |   | •   |    |   | • |    |    | •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정기교육    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산업안전<br>보건교육         | 신규채용시   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내용<br>변경시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안전<br>보건교육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관리감독자<br>교육    |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|   |   | •  |    |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일일점검    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순회점검                 | 정기점검    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점검           |   |   |   |   |   | 산재발 | 생시 |   |   |    |    |    |      |
| 밀폐공간<br>보건작업<br>프로그램 | 밀폐공간작업<br>안전교육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  |
| 위험성평가                | 전 부서 대상        |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| • | • | •  |    |    |      |
| 실시                   | 수시평가           |   | 1 | 1 |   |   | 산재발 | 생시 | 1 | 1 | 1  |    | 1  |      |

## 2. 보건관리업무 추진계획

| 01.5                      | -U-D       |   |   |   |   |   | Ę   | 립    |   |   |    |    |    | ні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--|------|---|---|----|----|----|----|
|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| 항목         | 1 | 2 | 3 | 4 | 5 | 6   | 7    | 8 | 9 | 10 | 11 | 12 | 비고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검진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  |     |      |   |   |    |    |    |    |
| 직원 건강                     | 특수검진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  |     |      |   |   |    |    |    |    |
| 검진<br>및 사 <del>후</del> 관리 | 배치 전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치 후       | • | • |   |   |   | •   | •    |   |   | •  | •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후 관리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<del>근골</del> 격계<br>질환    | 예방활동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예방활동                      | 유해인자조사     |   |   |  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   |    |
| <u> </u> 잠복결핵             | 경인 및 결과 관리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규 검진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 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산업안전보                     | 순회점검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건법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| 작업환경측정     |   |   |   | • | • | •   |      |   |   | •  | •  |    |    |
| 물질안전점검                    | 보호구 지급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직원건강 <del>증</del> 진       | 상비약제공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강관리실운영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/4분기      |   | • | •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    |    |    |    |
| 산업안전보건                    | 2/4분기      |   |   |   |   | • | •   |      |   |   |    |    |    |    |
| 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| 3/4분기      |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  | • | • |    |    |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/4분기      |   |   |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    | •  | •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일점검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순회점검                      | 정기점검      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 | •   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별점검       |   |   |   |   |   | 산재빝 | 날생 시 |   |   |    |    |    |    |

<sup>※</sup> 감정노동보호 및 직무 중 감염노출 업무 추진계획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수립함

## 3.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의무이행 추진계획

| л н          | +)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  | ę | 늴 |   |   |    |    |    | n) –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 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 비고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중대산업재해<br>종합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• | • |   |   |   |    | •  | •  |               |
| 안전           | 관리감독자<br>업무수행<br>평가 점검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• | • |   |   |   |    | •  | •  |               |
| 점검           | 중대시민재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• | • |   |   |   |    | •  | •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도급·용역·위탁<br>업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|   | • | • |   |   |   |    | •  | •  |               |
| 중대재해<br>예방교육 | 도급·용역·위탁<br>업무 최초<br>개시 전<br>해당업무<br>종사자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| •  | •  | •  | 필요시<br>(현장점검) |

## 4. 안전보건 사업계획

#### □ 산업안전보건교육

○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안전·보건교육)

○ 관련 서류는 각 부서 관리감독자 보관

○ 안전·보건교육 세부 계획

| 구분              | 대상 부서             | 교육 시간                  | 교육 내용 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정기교육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월 2시간<br>이상            | •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   | 근골격계질환 및<br>직무스트레스 예방<br>교육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규<br>채용시<br>교육 | 전부서               | 최초 8시간<br>이상           | •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 | 특별안전보건교육을   |
| 작업내용<br>변경 시 교육 |                   | 작업내용<br>변경 시<br>2시간 이상 | 동선에 관한 사항  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| 이수한 근로자에<br>대해서는 교육을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교육            | 유해물질<br>사용부서<br>등 | 16시간이상                 | <ul> <li>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 | 최초작업에 종사하기<br>전 4시간 이상실시하고<br>12시간은 3월 이내<br>분할하여 실시 가능 |
| 관리감독자<br>교육     | 전부서               | 16시간이상                 | • 관리감독자의 업무   |   |

#### □ 순회점검

○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, 22조 【첨부 1,2】참고

| 구분         | 점검자            | 점검내용  | 점검주기       | 보고체계/주기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정기순회<br>점검 | 안전관리자<br>보건관리자 | - 안전·보건관리자가 작업장을 순회하며 안전·보건<br>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감독<br>자에게 조언 및<br>조치의 건의 | 2회/월       | 의료원장/월          |
| 특별점검       | 안전관리자<br>보건관리자 | - 산업재해가 발생되거나 특별히 점검이<br>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<br>- 재해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대책 수립           | 산재<br>발생 시 | 의료원장/<br>산재발생 시 |

#### □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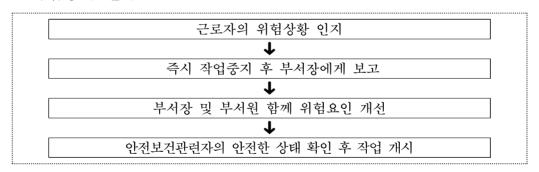
○ "근로자 작업중지 제도" 운영

가, 개 요

-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위험상황인지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
- 아전보건과런자가 작업을 중지시키는 "근로자 작업중지 제도" 운영
- 나.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- 다. 근 로 자 : 서울의료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
- 라. 근로자 작업중지 내용
  - 근로자의 작업 중지요청 : 근로자가 불안전한 상태(시설,작업환경)등으로 안전시고 발생 위험상황 인지 시 작업을 중당하고 위험요인 개선 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
(※ 작업중지 요청시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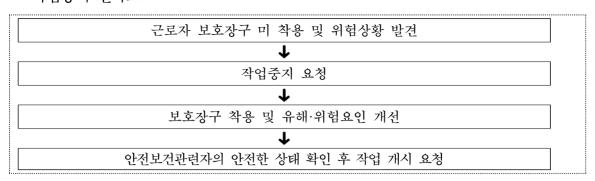
#### 1) 작업중지 절차도



#### 2) 작업중지 내용

- · 근로자 작업 중 이상 징후 발생 시
- ·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시
- · 산업재해 발생 시
- ·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이상 증상 발생 시 휴식을 취함(필요시 의사 진료)
- 안전보건관련자의 근로자 위험작업 작업중지 요청
  - (※ 안전보건관련자 :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산업보건의, 관리감독자, 안전·보건관리자, 명예산업안전감독관, 관련 업무안전담당자)

#### - 작업중지 절차도



- 근로자 위험작업 내용
  - 1) 건축공사 등 시설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
  - 2) 근로자의 2인 1조 미작업
    - ·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.2m 이상 사다리 작업 시
    - · 무게가 15kg 이상 되는 중량물 운반 시
    - 6개월 미만의 신입근로자가 위험작업 또는 위험작업장 작업 시
  - · 기타 2인 1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작업 시
  - 3)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미착용
  - 4) 폭염, 한파 특보 발령 시 외부 현장근로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고 병원 내부 작업 유도
  - 5) 옥상 및 난간 등 추락위험 구간에서 보호구 미착용
  - 6) 위험기계·기구에 방호조치를 미설치하여 절단 또는 말림 등 사고 위험이 클 경우
  - 7) 용접, 용단 작업 등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시
  - 8) 작업구간에 조도불량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
  - 9)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보호구 미착용
-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·시행
  -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, 조직을 운영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 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
  - 적용대상

| 구분 | 공정명  | 작업장소             | 작업내용       | 작업주기<br>(작업빈도) | 출입대장<br>작성여부 | 허가서<br>작성 <b>여</b> 부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<b>ストインを</b>   | B4F 지하저수조실       | 시수탱크 청소    | 년2회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 |
| 2  | そそれそろなと  | B4F 지하저수조실       | 중수탱크 청소    | 년1회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 |
| 3  | <b>ストラング ストラン ストラン ストラン ストラン ストラン ストラン ストラン ストラン</b> | PHF 고가저수조실       | 시수탱크 청소    | 년2회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 |
| 4  | そそれそろなと  | PHF 고가저수조실       | 중수탱크 청소    | 년1회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슬러지 제거   | B4F 폐수처리장 슬러지집수조 | 침전조 비닥청소   | 년1회            | 0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유지관리   | B4F 폐,중수처리장      | 일상점검       | 매일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  |
| 7  | 약품처리   | B4F 폐,중수처리장      | pH조절, 소독 등 | 주5회            | 0  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유지관리   | 전문병상 오수처리시설      | 일상점검       | 주1회            | 0  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  |
| 9  | 유지관리   | 권역응급센터 감염폐수탱크    | 일상점검       | 매일             | 0  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  |

| 측정가스      | 기준농도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산소(O2)    | 18% ~ 23.5% |
| 일산화탄소(CO) | 30ppm 미만    |

#### □ 위험성평가 실시

- 근로자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을 목적 으로 함.
- 평가 완료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
- 2024년 위험성 평가 추진 일정

| 구분          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|
| 계획 수립 및 교육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  |    |
| 체크리스트 및 평가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  |    |
| 평가결과 검토 및 보고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•   |     |     |    |
|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  |    |

#### □ 건강장해예방활동

- 직원건강검진
  - 가.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. 130조(단. 채용시 검진은 제외)
  - 나. 대상자 및 검진시기

| 구              | '분 | 담당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시기 |     |
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| 신규 | 인사운영팀                 | 채용 <sup>1)</sup><br>검진 | -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예산  | 채용시 |
| 직원<br>건강<br>검진 | 선기 | 보건관리자                 | 배치전<br>검진              |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별표22에<br>해당하는 업무 종사자의 배치 전 | 비예산  | 상시  |
|                | 재직 | 이미 트스크기(기키 메쉬 기 중 표정)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연1회 |

- 1)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질병관리본부 「의료기관 결핵관리안내」에 따른 사항
- 2) 잠복결핵검진 대상자 :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에 따른 고위험부서만 정기적 검진 실시
  - 다. 검진 이상소견자 사후관리
    - 검사 이상 소견에 대해 문자 및 전화 상담 실시
    -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추후 관리
    - 1)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조치 【고용노동부 고시,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8조 】

| 구 분 | 추후관리조치 판정            |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   | 필요없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   | 건강상담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 | 특수보호구 착용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 | 추적검사                 | - 추적 검사 실시                |
| 4   | 근무중 치료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 | 근로시간 단축              | - 직원 상담 실시                |
| 6   | 작업전환                 | - 관련부서에 사후소견서 결과 전자결재로 알림 |
| 7   | 근로금지 및 제한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 | 직업병확진의뢰안내(건강단기관이 안내) | - 신업인전보건 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과 보고 |
| 9   | 기타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근골격계질화 부담작업 예방활동

가,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

나. 예 산: 72,800 천원

- 근골격계 유해인자조사 : 17,800 천원

-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: 5,000 천원

- 압박스타킹 : 50,000 천원

다. 활동기간 : 2024년 1월 ~ 12월

라. 예방활동계획 (※ 추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 후 변경 가능)
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실시
-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부서에 보조기 지급
- 업무 작업 전·후 스트레칭운동
- 정맥류 예방을 위한 압박스타킹 지급

#### □ 2024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계획

- 가.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, 제37조
- 나. 분기별 산업안접보건위원회 개최 결과예정
-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사항에 따라 직원의 안전·보건 사항 심의·의결함 (예,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등)

#### 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의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측정

- 유해화학물질 정기점검
  - 가.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8조, 22조
  - 나. 점검 및 교육
    - 안전·보건관리자는 월 2회 안전관리 및 국소배기장치 점검
    - 취급 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사용에 대한 점검
    - 특별 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·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
    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 물질명·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 점검
    - 유해화학물질의 신규 구입 및 교체 시 유해물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물질에 대한 MSDS 교육실시
- 작업화경측정

가. 관련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125조

나. 예 산: 11,000천원

다. 측정계획

- 측정대상물질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해당물질

측정기간 :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

- 측정방법 : 사업장내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확인 후 작업환경측정 기관 의뢰

#### □ 감정노동보호 위원회 운영

- 임상심리사의 감정노동보호 활동
- 가. 직원 대상 1: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
  - 추진대상 : 서울의료원 전 직원
  - 추진목적 : 감정노동으로 쌓인 직원 스트레스를 1:1 심리상담, 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회복 및 심리적 치유
  - 추진기간 : 연중(1 ~ 12월)
  - 운영방법 :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소속 임상심리사가 직원의 전반적인 성격특성, 적응능력, 정 서상태, 정서 반응 양식, 스트레스 대처방식, 대인관계 양상 등을 알아보는 개인 맞춤형 심리검사 실시
  - 소요예산 : 5,000,000원(자체예산)
- 나.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감정노동 종사자 현황 실태 조사
  - 추진대상 : 서울의료원 전 직원
  - 추진목적 : 감정노동 관련 직원의 스트레스 현황 파악을 통해 부서 사업방향 도출
  - 추진기간 : 연 각 1회 (4주간 설문 조사)
  - 운영방법 : (직무) KOSS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설문 실시 (감정노동) 한국인 감정노동 평가도구 및 요구도 설문 실시
- 다. 감정노동보호 예방 캠페인
  - 추진개요 : 감정노동 존중 및 인식 개선, 감정노동 관련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방안 홍보 등
  - 추진기간 : 연 ]회
  - 추진내용 :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과런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
  - 소요예산 : 3,000,000원(자체예산)
- 고충 전문 상담 창구 운영
  - 가.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 할 수 있는 전문 상담창구 개설: 감정보호노동위원회('20.9월)
- 나. 고충 사안별 판단과 결정이 올바르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세분화
  - (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)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문제 해결
  - (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) 직장 내에서 일어난 괴롭힘 관련 문제 해결
  - (고충심사위원회) 인사담당 및 일반고충 등을 해결
- 다. 사안별 직원의 고충이 신청 된 경우 지체 없이, 고충사항 및 원하는 방향을 청취하고 규정 및 내규, 지침에 따라 처리
- 직원 스트레스 돌봄 프로그램 운영 관련
- 가. 스트레스 돌봄 힐링 프로그램
  - 추진대상 : 서울의료원 전 직원(약 200명(1회당 30명 이내))
  - 추진목적 : 직무 스트레스 위화 및 직원간 소통 활동화 도모,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
  - 추진기간 : 3~4월
  - 프로그램 : 시네마 콘서트, 네온사인 만들기, 가죽 공예, 명상 등
  - 소요예산 : 25,000,000원(자체 예산)

#### 나. 산림치유 프로그램

- 추진대상 : 서울의료원 전 직원

- 추진목적 : 산림치유를 통해 직군 및 부서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간 업무 이해를

돕고. 직무 스트레스 감소 효과 기대

- 추진기간 : 9~10월

- 참여인원 : 200명(1회당 30명 이내)

- 프로그램 : 힐링 숲 걷기, 약초 족욕, 산림운동 등

- 소요예산 : 14.000.000원(자체예산)

#### □ 직무 중 감염노출 관리

○ 추진계획 : 직원 감염의 조기예방으로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

- 세부사항
- 가. 직무 중 감염노출 : 혈액매개질환자에게 주사침자상, 피부 및 점막등에 노출된 경우
  - 전산 입력 후 유선보고→ 노출여부에 따라 감염내과 진료 → 검사 및 투약
- 나. 기타 위험요인 : 접촉매개질환, 공기매개질환 노출 시
  - 공기매개질환(결핵 등) 노출 시 원내 방침에 따라 진행
  - 접촉매개질환 노출 시 노출상황, 관련위험요인, 노출정도 등을 파악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검사 및 처치·투약
- 사후관리
  - 가. 신규직원 및 전직원 대상 직무 중 감염노출 예방 교육
  - 나. 노출 발생시 노출자 대상 교육
  - 다. 결과보고: 감염관리소위원회(분기), 감염관리위원회(분기)
  - 라. 관련부서에 직무 중 감염노출 보고서(1회/분기) 협조 공문
  - 마. 지표결과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전직원 공유
  - 바. 수가규정시행내규 제10조 1항 2호에 따른 진료비 감면

### 5. 중대재해 대응 추진 계획

- 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 수행위한 조치 및 안전·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여부점검 및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. 필요조치
  - 중대산업재해 종합점검,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등
    - 점검기간: 2024년 상·하반기 시행 예정
    - 매월 신규채용직원 대상 중대(산업)재해 예방교육 실시
    - 시설 안전관리 특별점검 상반기, 하반기 2회 실시
    -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내용 : 안전계획수립 여부, 안전관련 인력편성 및 예산편성·집 행,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, 관계 법령상 의무 선임 및 교육이수 여부 등

- (도급·용역·위탁)시 안전·보건 점검 및 조치 실시
- 계약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"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" 작성
- 최초업무 개시 전 해당업무 종사자 중대(산업)재해 예방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
- 계약업체 "안전보건 수준 평가표"에 의한 점검 및 개선조치
- · 점검기간 : 2024년 상·하반기 시행 예정

## 6. 안전보건 예산계획

□ 2024년 안전보건관리 예산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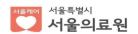
(단위 : 천원)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| 예산항목  | 내 <del>용</del> | 금액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리후생비 | 정맥류 예방용 스타킹    | 50,000  |    |
| 근골격계 질환<br>예방활동         | 소모품비  | 근골격계 장애 예방활동   | 5,000   |    |
| 세 8월 8                  | 지급수수료 | 근골격계 유해인자조사    | 17,800  |    |
| 건강증진병원사업                | 행사비   | 건강증진프로그램       | 5,000   |    |
| 산업안전보건법에                | 지급수수료 | 작업환경측정         | 11,000  |    |
| 따른 물질의 안전점검 및<br>작업환경측정 | 소모품비  | 보호구            | 1,405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수수료 | 대한산업안전 협회비     | 760     |    |
| 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수수료 | 전국병원안전보건관리자협회  | 1,300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수수료 |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비    | 250     |    |
| 공기질 측정                  | 지급수수료 | 실내공기질 측정       | 5,000   |    |
| 건강관리실 운영비               | 복리후생비 | 건강관리실 운영       | 1,200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수교육비 |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    | 500     | 2인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수교육비 | 산업안전관리자 보수교육   | 500     | 2인 |
| 안전관리 교육                 | 보수교육비 | 보건관리자 전문화교육    | 600     | 2인 |
| 0 0 0 0 m q             | 보수교육비 | 산업안전관리자 전문화교육  | 980     | 2인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정교육비 | 관리감독자 교육       | 7,000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수교육비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| 60      |    |
| <br>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비     | 참석수당  | 위원 참석 수당       | 600     |    |
| 한엔포신경경제전의 판경미<br>       | 운영진행비 | 위원회 운영비        | 200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 계   |                | 109,155 |    |

<sup>※</sup> 감정노동보호 및 직무 중 감염노출 예산은 각 해당부서에서 계획함

##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점검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  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|------|---|--|
| 점검일자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  | 일 일         | 업체명         |    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 점 검 자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수급업체<br>책임자 |    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저거하고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점검 | <br>결과 | 개선요망 | 비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점검항목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양호 | 미흡     | 사항   | 고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과 관련된 기계<br>유무 확인   | ·기구 또는 설비으  | 니 안전·보건 점   | 검 및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 점검과<br>- 정기교<br>- 신규차    | ●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<br>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<br>- 정기교육(관리감독자 교육포함) 실시 및 기록보존(5년)<br>-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실시 및 기록보존(5년)<br>-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보존(5년)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 ● 해당 <sup>3</sup><br>급조치 | 작업에서 발생한 신  | 업재해에 관한 보   | 고 및 이에 대    | 한 응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 ● 해당 ?<br>감독             | 작업의 작업장 정리  | ·정돈 및 통로 확5 | 보에 대한 확인·   |    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 ● 산업인<br>협조              |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의 지도· 조언에 대한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 - 위해 -                   | 평가의 실시<br>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<br>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| 평가에 다                    | 평가에 대한 의견사항 및 개선조치 사항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|      |   |  |



#### [첨부 2]

## 안전·보건 순회점검표 (업무수행 내용)

 금
 금

 대
 등

 대
 등

년 월 일 요일

점검자 : 안전관리자

(인) 안전관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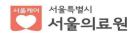
(인)

보건관리자

(인) 보건관리자

(인)

| 순 회            | 점 검             | 사 형               | 라<br>5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[범례                 | ] 양             | ৳:((     | ) (C        | ] 흡:(             | <u>\</u> \( \)  | 불량:                 | (X)             | 해당요                 | t음:(,             | /)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분야별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| .기겨               | 1,기구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| 년기, <b>호</b> | 하공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3.환         | 경,시               | 설물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4.                  | 작업기               | 7                 |
| 구              | 가 스 사 용 시 설 상 태 | 폐 수 처 리 장 관 리 상 태 | 유해 위험 기계기구의상태 | 일 반 기 계 기 구 의 상 태 | 전 기 설 비 관 리 상 태 | 기계기구의접지상태    | 위험 물 질 관 리 상 태 MSDS | 정 리 정 돈 청 결 상 태 | 건축구조물의상태 | 소화 시설의 관리상태 | 한 전 표 尺 이 관 리 상 태 | 적 재 물 의 관 리 상 태 | 소 음 분 진 조 명 등 의 상 태 | 국 소 배 기 장 치 상 태 | 복 장 보 호 구 의 착 용 상 태 | 불 안 전 행 동 노 출 명 부 | 작 접 기 구 의 안 전 상 태 |
| 점검<br>결과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문제점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방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업무<br>수행<br>내용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1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

[첨부 3] 주요부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

| 부 서  | 위험요소            | 준수사항   |  |  |
|--|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병동   | 유해물질            | <ul> <li>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준수</li> <li>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</li> <li>안전보건표지 부착</li> <li>적절한 보호구착용 등</li> <li>지정된 장소에 지정수량 미만 보관(유출 방지)</li> </ul> |  |  |
| 및<br>외래  | 감염노출            | ● 혈액매개질환자 주사·채혈 시 안전바늘 사용 ● 바늘 사용 후 recapping 금지, 불가피한 경우 one hand technique ● 손상성 폐기물 정리시 도구 이용 ● 감염병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착용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| 기타              | <ul><li>정리정돈 및 교육 실시</li><li>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안전보건점검</li></ul>  |  |  |
|  | 화상              | <ul> <li>스팀 및 뜨거운 물질 취급 시 화상예방 조치</li> <li>(토시, 장갑, 앞치마 등 착용)</li> <li>뜨거운 액상 물질 이동시 용기 취급방법 조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영양팀  | 시설              | <ul> <li>기계시설을 청소 및 정비 할 때는 전원 차단</li> <li>고장 난 기계사용 금지</li> <li>안전보건표지 및 안전수칙 부착</li> <li>신규직원 : 기계사용 방법 숙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영앙팀  | 소음              | • 컨베이어, 야채절단기, 식기세척기 등의 베어링 등 소음 발생장치 수리보수<br>• 식기 세척 시 청력보호구(귀마개) 착용  |  |  |
|  | 충돌              | • 배식 카 운반 시 충돌예방을 위한 운행수칙 준수   |  |  |
|  | 기타              | <ul> <li>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제거</li> <li>정리정돈 및 교육 실시</li> <li>관리감독자등에 의한 안전보건점검</li> <li>미끄럼 방지 조치(바닥청소 등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 | 기계설비 및<br>가스시설  | • 법정검사 실시(정기검사, 자체검사 등)<br>• 방호장치 설치<br>• 안전수칙 마련 및 숙지   |  |  |
| 시설관리팀  | 유해물질,<br>소음, 분진 |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준수     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     안전보건표지 부착     적절한 보호구착용     지정된 장소에 지정수량 미만 보관(유출 방지)  |  |  |
|  | 기타 안전사고         | <ul><li>■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제거</li><li>● 정리정돈 및 교육실시</li><li>● 관리감독자등에 의한 안전보건점검</li></ul>  |  |  |
| 영상의학과  | 방사능피폭           | • 관리감독자에 의한 자체관리   |  |  |
| 일<br>및<br>핵의학과   | 유해물질            | ■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준수<br>■ 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<br>■ 안전보건표지 부착  |  |  |
| *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준수 * 유해물질 위험성 및 취급요령 준수 * 안전보건표지 부착 * 적절한 보호구착용 * 지정된 장소에 지정수량 미만 보관(유출 방지) |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기 타  | 근골격계질환          | • 부서별, 업무별 근골격계질환 예방수칙 준수  |  |  |

#### [첨부 4]

####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관리

- 0 관련근거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【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】
-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【안전인증】
-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【안전검사】
-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 사항(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등)

| 기계/기구명    | 주요 방호조치 내용   |
|-----------|--|
| 교류아크용접기   | - 자동전격방지기  |
| 회전기계      | - 기계의 원동기, 회전축, 기어, 플라이휘일, 벨트 및 체인 등에는 덮개, 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목재가공용 둥근톱 | - 날 접촉 예방장치, 반발 예방장치   |
| 보일러       | -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스위치  |
| 연삭기       | - 덮개   |
| 압력용기      | - 압력방출장치   |
| 승강기       | - 과부하 방지장치, limit switch, 비상정지장치, 조속기, 출입문 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 |
| 컨베이어      | - 정전, 전압강하 등에 의한 운반구의 이탈 방지<br>- 비상정지장치 설치   |
| 가스용기      | - 전도위험 예방<br>- 충격을 가하지 말 것<br>-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○ 안전인증, 안전검사 대상 기계·기구(법 제84조)

| 기계/기구명 | 위치            | 대수 | 안전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검사\유효기간            | 검사기관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압력용기   | 전문병동 1층 의료가스실 | 1  | <ul><li>최초 설치</li><li>전 시행</li></ul> | 21.09.11.~ 23.09.10. | 한국승강기  |
|        | 지하 3층 의료가스실   | 2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.09.13.~ 23.09.12. |        |
|        | 지하 4층 의료가스실   | 1  | _ 선거왕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.09.13.~ 23.09.12. | 1/1/01 |

## □ 유해·위험요인 방호조치 준수

| 유해·위험요인   | 주요 방호조치 내용   |  |
|-----------|--|--|
| 전기기계기구    | -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 -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설치 -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- 과전류 보호 장치 설치 및 비상전원 사용상의 관리 -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조치 -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-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방폭 설비 |  |
| 배선 및 이동전선 | - 습윤 장소에서의 전선은 충분한 절연효과 있는 것을 사용 -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금지(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 경우는제외) - 꽂음 접속기의 설치 사용 시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  |  |
| 정전작업      | 전작업 -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 금지표시<br>- 작업 전 잔류전하 방전  |  |
| 활선작업      | - 도전체의 충전전로 접촉금지<br>- 활선작업요령 작성 및 교육<br>- 고활선 작업 및 특별고압작업 활선작업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  |  |
| 사다리 등 작업  | -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마련 및 교육<br>- 이동식 사다리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   |  |
| 소음작업      | - 소음 감소조치 마련<br>- 소음수준의 주지 및 교육<br>-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|  |